

『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4월 2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인천시 모든 시민이 정신적·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 스스로도 변화·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 및 5조)

나. “부모학습종합계획”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및 부모학습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다. 인천광역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

정함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
라.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

마.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학습계좌의 운영을 규정함(안 제14조)

바.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, 인천광역시교육청·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(안 제1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7년 5월 4일(목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e-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kbboss76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			
○성 명 :			
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(붙임)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(붙임)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·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 스스로도 변화·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부모학습"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, 기술을 제공하고,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,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,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기본원칙)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,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.

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.

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제고

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.

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책무) ① 시와 자치구, 각급 학교,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,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인천광역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모학습의 실태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
2.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3.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5.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
6.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부모학습 내용)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
2.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
3.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
4.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
5.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
6.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
7.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

제8조(부모학습자문위원회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

· 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「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조례」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
2.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각급 기관·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
4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

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부모학습 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재정지원)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4조(학습계좌제) ① 시장은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·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·관리(이하 "학습계좌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계좌를 가진 사람은 시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.

제15조(교류협력 등)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, 인천광역시교육청·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·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

(붙임1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■ 헌법 제31조 ■ 교육기본법 제13조(보호자) ■ 청소년기본법 제6조(가정의 책임) 제7조(사회의 책임) ■ 건강가정기본법 제7조(가족가치) 제9조(가족해체 예방) 제32조(건강가정교육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☐ 헌법

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.

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

④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
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.

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☐ 교육기본법

제13조(보호자)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.

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☐ 청소년기본법

제6조(가정의 책임)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

음을 인식하여야 하며,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
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
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
여야 한다.

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
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
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
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
여야 한다.

④ 가정의 무관심·방치·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
출하거나 비행(非行)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
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.

제7조(사회의 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
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
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, 청소년의 비행
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
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
하여서는 아니 되며,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

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·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7조(가족가치) 가족구성원은 부양·자녀양육·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.

제9조(가족해체 예방)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(붙임2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부모학습 강사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발생

※ 사업량(부모학습 신청자수)에 따라 변동가능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중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사업의 종류,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으나, 연평균 1억원 범위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작성자 :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권 후 자